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5. 6. 1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5. 5. 23.
- 회부일 : 2025. 5. 23. (의안번호 : 25-53)

2. 제안이유

○ 마포구 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마포구 구민상 수상 대상 및 시상 부분 변경(안 제9조)
 - 구민상 수상 대상 거주 요건 명확화(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용감한 구민, 장한아버이 → 안전·환경, 교육 / 봉사 → 봉사·기부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6조)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마포구 표창조례
 - 입법예고: 2025. 4. 17. ~ 5. 7.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구민상 시상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Ⅰ 주요 개정내용

- 수여 자격의 명확화
 - 제9조 제1항: “거주”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로 개정하여 표창 대상의 자격요건 명확화
- 표창 분야의 정비
 - 제9조 제2항: 기존 “용감한 구민”, “장한아버이”, “봉사” → “안전·환경”, “교육”, “봉사·기부” 등으로 용어를 현대화하고 범위를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9조	[시상부문] 문화, 체육, <u>용감한 구민</u> , <u>장한어버이</u> , <u>효행·선행</u> , <u>봉사</u> , 지역발전	[시상부문] 문화, 체육, <u>안전·환경</u> , <u>교육</u> , <u>효행·선행</u> , <u>봉사·기부</u> , 지역발전

○ 표창 수여 제한 및 취소 근거 신설

- 제16조 제목을 “표창의 제한 및 취소”로 변경
- 제1항: 중대한 비위행위자, 동일 공적 수상자, 기타 표창 계획에 의거 제한 대상자에 대해 표창 수여 제한 규정 명시
- 제2항: 공적의 허위, 부적격 수상 등에 대한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 마련. 단, 상장 및 감사장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6.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표창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